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**광주지방검찰청**  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이장우  
전화 062-231-4332/팩스 062-231-4951

**보도자료**  
2024. 12. 13.(금)

##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조직을 범죄단체 혐의로 엄단 - 조직원 16명을 범죄단체조직·가입·활동죄 등으로 추가 기소 -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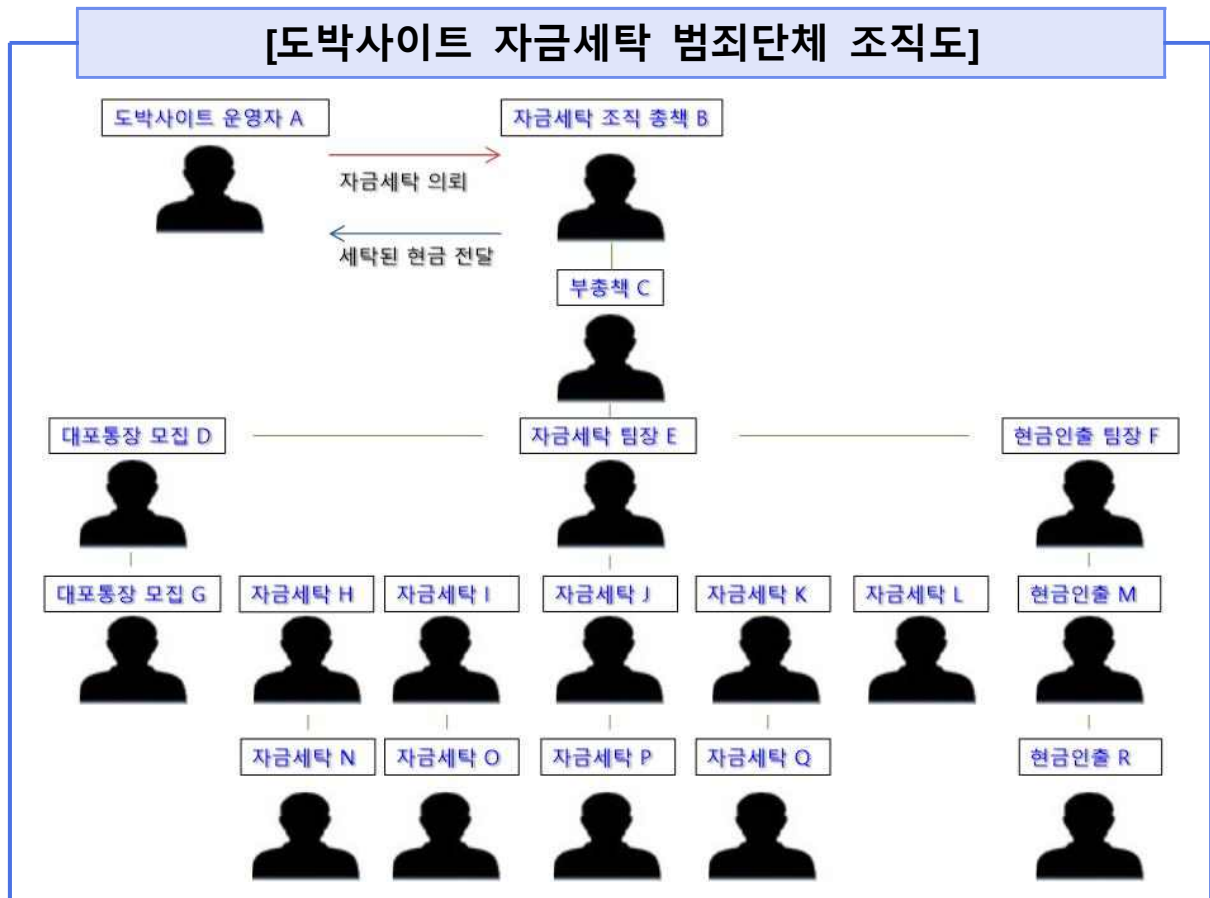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(제11조 제2항 제1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광주지검 반부패·강력수사부(부장검사 조정호)는 오늘 2,600억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자금세탁 후 462억 원의 수익금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해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조직원 16명을 범죄단체조직·가입·활동죄 등으로 기소(구속 1명, 불구속 15명)하였음
- 이 사건 자금세탁 조직원들 중 15명은 이미 '23. 12.경부터 '24. 8.경까지 도박공간개설죄, 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개장등)죄 등으로 징역 8월부터 2년 6월까지 실형(2명 집행유예)을 선고받아 수형 중인 상태이나,
  - ① '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자금세탁을 한 범행'은 이를 위해 '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한 범죄'와는 다른 범죄인 점,
  - ②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에 관하여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였음
- 수사결과, 이들은 국제PJ파 소속 조직폭력배를 정점으로 지휘·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결성하여 약 1년간 20여 개의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2,600억 원 상당의 도금을 조직적으로 자금세탁한 사실을 확인했고,
  - 수사과정에서 이들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1명을 구속하고, 종전에 처벌받지 않은 조직원 1명도 구속하였으며, 도망간 조직원 1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였음
- 검찰은 앞으로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조직에 대하여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하여 엄정히 처벌함으로써, 사회구성원 특히 청소년들을 인터넷 도박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
## I 피고인 및 피의자

- 구속기소 : A (38세, 도박사이트 운영자), M (28세, 자금세탁 조직원)
- 불구속기소 : B (28세, 자금세탁조직 총책임자 '국제PJ파' 조직원) 등 15명
- 기소중지(지명수배) : F (28세, 자금세탁 조직원)

▶ 불구속기소된 자금세탁 조직 총책 B 등 15명 중 13명은 이미 도박공간개설, 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개장등)죄 등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,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음



## II 공소사실 요지

- A는 B 등 자금세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'22. 7.경부터 '22. 9.경까지 도금 규모 107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, 차명계좌로 도금을 이체하여 자금세탁하고, B 등으로부터 13억 7,022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수수함 [도박공간개설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

- B~R 등 16명은 ① '22. 7. ~ '23. 7.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고, ② '22. 7. ~ '23. 8. 도금 약 2,600억 원을 입금받아 A 등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, 차명 계좌로 도금을 이체하여 자금세탁하고, 수익금 462억 원을 현금으로 세탁하여 A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함 [범죄단체조직·가입·활동 등]

### III

## 주요 수사 경과

- '23. 9. ~ 10.            B 등 조직원 5명 구속 기소(광주지검)
- '23. 11. ~ 12.        E 등 조직원 14명 기소(울산지검, 구속 7명, 불구속 7명)

▶ 광주지검과 울산경찰청이 이 사건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각각 개시하여, 상호 협의를 거쳐 범행기간에 따라 조직원들을 분담하여 수사 진행

- '23. 12. ~ '24. 2.    자금세탁 조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
- '24. 5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도박사이트 운영자 A 구속기소

▶ B 등에게 도박사이트 도금 및 수익금 자금세탁을 의뢰한 A는 '24. 11. 8. 징역 3년, 추징 13억 7,000여 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임

- '24. 4. ~ 11.        자금세탁 조직원 17명 범죄단체 혐의 조사·입건
- '24. 11. 27.        조직원 M 구속
- '24. 12. 13.        조직원 B, M 등 16명 기소, F 기소중지

### IV

## 수사결과

### ▣ 자금세탁 범죄단체 결성 경위

- B는 폭력조직인 '국제PI파' 조직원으로, '22. 7. 대포통장 불법유통을 하다가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 A로부터 도금세탁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C, F 등 주변 지인들과 함께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한 뒤, D, E, H, M 등 조직원들을 가입시킴

- B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자금세탁 조직을 홍보하고 자금세탁을 의뢰받는 역할, C·E는 직원들을 관리·감독하는 역할, D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, H 등은 입금된 도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세탁하는 역할, F·M 등은 세탁된 현금을 인출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등 조직적으로 도금세탁 범죄를 저지름
- 이들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도금세탁 사무실을 차리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, 컴퓨터에 VPN을 사용하여 IP추적에 대비하였으며, 1~3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전하고,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연락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활동하였음

## ▣ 20여개 도박사이트에서 2,600억 원 규모의 도금세탁

- B 등은 '22. 7.경 A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고 '22. 9. 중순경까지 2개월 간 약 100억 원 규모의 도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세탁해 준 것을 시작으로, '23. 8. 중순경 총책 B 등이 검거될 때까지 20여 개의 도박사이트 도금 합계 약 2,600억 원을 입금받아 자금세탁하였음
- B 등은 A에게 세탁된 범죄수익 약 13억 7,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462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세탁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였고,
- 그 과정에서 대포통장 148개를 대여받아 도금세탁에 활용하였으며, 모바일뱅킹에 필요한 대포폰도 다수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었음
- B 등은 도금이체 및 현금인출을 통해 세탁한 도금의 약 1~2%의 금액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수료로 수취하였는데,
- 광주지점이 '23. 8.경 총책 B, 부총책 E를 검거하였을 당시, 이들의 주거지에서 현금 3억 4,500만 원, 금송아지, 명품 시계, 명품가방 등 약 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한바 있음

## ▣ 범죄단체 혐의 적용하여 추가 수사

- 이 사건 자금세탁 범죄단체의 총책 B, 부총책 E를 비롯한 조직원 15명은 이미 도박공간개설, 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개장등)죄 등으로 '23. 12.경부터 '24. 2.경까지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거나(13명) 집행유예를 선고받아(2명) 판결이 확정되었음
- 그럼에도 인터넷 도박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,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, 특히 청소년들에게 도박 중독, 2차 범죄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,
- 이 사건 조직은 자금세탁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자금세탁책, 현금 인출·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범죄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,
-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경위, 인적·물적 설비, 지휘·통솔체계 등에 관하여 조직원들을 전면 재조사하고, 총책 B의 휴대폰을 재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등 범죄단체조직·가입·활동 등 혐의를 입증하였음

## ▣ 범죄단체조직·가입·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하여 엄단

- B를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기본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이미 처벌받기는 하였으나, 그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범죄는 기존에 처벌받은 범행과 별개이기 때문에 추가 기소가 가능함
- 범죄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, 그 위험성과 폐해가 일반범죄보다 크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,
  - 대검찰청에서도 4세대 조직범죄의 유형 중 하나인 온라인 도박범죄 조직에 관하여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도록 지시한바 있음

- ▶ '23. 12. 1. 대검찰청 주관 『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』에서 4세대형 조직범죄(보이스피싱, 온라인도박, 주가조작·코인사기, 전세사기, 대포통장 유통, 불법사금융 등)에 대하여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혐의 적용하여 엄단하도록 지시

- 이에 따라 소위 'MZ 조폭'인 총책 B를 비롯하여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범죄단체조직·가입·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하여 엄단하고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함

**[개별범죄와 범죄단체활동죄는 별개의 범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]**

▶ 2022. 9. 7. 선고 대법원 2022도6993호 판결

-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처벌법위반(단체 등의 공동강요)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폭력행위처벌법위반(단체 등의 활동)죄는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 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, **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**로서 범행의 상대방, 범행 수단 내지 방법, 결과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익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.

▶ 2024. 7. 25. 선고 대법원 2024도6909호 판결

-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는 **그 구성요건, 보호법익 및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위 두 죄는 실제적 경합관계**에 있다.

**V**

**향후 계획**

- 검찰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도박중독, 2차 범죄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등 조직범죄에 엄정 대응하고,
-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, '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'는 인식을 확산시키고,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분별하게 발호하는 4세대 조직범죄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 ■■■